

제391회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정기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2월2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7)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5)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6)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27)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926)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003)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323)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80)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42)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92)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38)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10)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8)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871)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33)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40)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0)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7)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16)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29)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35)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84)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1)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474)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1)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67)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12)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4)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01)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40)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2)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24)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82)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65)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2)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85)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70)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90)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79)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31)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40)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884)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7)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1)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28)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68)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65)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78)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11)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6)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55)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4)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79)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71)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6)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7)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7)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0)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4)
60.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7)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9)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9)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64)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79)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55)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68)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391)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402)
69.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8770)
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3127)
7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5)
7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168)
7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149)
7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438)
7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2)
7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81)
7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7)

7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4)
7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2)
8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1)
8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293)
8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5)
8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7)
8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78)
8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23)
8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51)
8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1)
8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2)
8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4)
9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47)
9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03)
9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5)
9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392)

상정된 안건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7) 5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5) 5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6) 5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27) 5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926) 5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03) 5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23) 5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80) 5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42) 5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92) 5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38) 5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10) 5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8) 5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1) 6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3) 6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40) 6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0) 6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7) 6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16) 6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9) 6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35) 6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84) 6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1) 6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4) 6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1) 6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7) 6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2)	6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4)	6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1)	6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	6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2)	6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4)	6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2)	6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5)	6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2)	6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85)	6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70)	6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0)	6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79)	6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31)	6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40)	6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884)	6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7)	6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1)	6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28)	6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68)	6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65)	6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78)	6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11)	6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6)	6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55)	6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4)	6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79)	6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71)	6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6)	6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7)	6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7)	6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0)	6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4)	7
60.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7)	7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9)	7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9)	7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4)	7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9)	7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5)	7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8)	7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1)	7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2)	7
69.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0)	7
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7)	7

7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5) ... 7
7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 7
7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 7
7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 7
7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 7
7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 7
7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7) ... 7
7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4) 7
7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2) 7
8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1) 7
8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3) 7
8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 7
8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 7
8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 ... 7
8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 ... 7
8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 ... 7
8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 7
8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 ... 7
8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7
9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7
9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 7
9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 7
9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 ... 7

(09시07분 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원회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산림청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입장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분이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
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시되 속기록 작
성 등을 위해 발언 모두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87)
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55)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56)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827)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926)
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003)
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323)
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3980)
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242)
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 표 발의)(의안번호 2105092)
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 표 발의)(의안번호 2105138)
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 표 발의)(의안번호 2105610)
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 표 발의)(의안번호 2105668)

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5871)
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6133)
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6140)
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6650)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6657)
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6816)
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6829)
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7035)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7184)
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7471)
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7474)
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7701)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7967)
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012)
2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024)
2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401)
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440)
3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522)
3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524)
3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582)
3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665)
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752)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385)
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570)
3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690)
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779)
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831)
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840)
4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9884)
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0137)
4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0301)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0428)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0768)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065)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278)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611)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646)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655)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874)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879)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971)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1996)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237)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337)
5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12560)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4)
60.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7)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9)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9)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4)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9)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5)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8)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1)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2)
69.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0)
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27)
7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5)
72.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8)
7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49)
7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38)
7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72)
7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81)
77.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7)
7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4)
7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2)
8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11171)

8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293)
8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
8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
8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78)
8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23)
8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51)
8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1)
8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
89.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
90.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47)
9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03)
9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5)
9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92)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3항까지 모두 9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상정에 앞서서 김선교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안건 주요 내용 및 개정안 정리의 81번이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정을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선교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서 81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의하고 다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

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II권의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뒷부분입니다.

지역축협 및 품목조합의 조합원 가입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계열농가가 현행 법상으로는 지역축협에 가입하는 데 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계열농가가 지역 축산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95년 6월 이전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2월 18일 날 소위에서 정부는 축산 대표, 축협 등 현장의 논의를 모아 다양한 유형의 계열화에 대한 유형을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지난번 법안소위에서도 한번 다뤘던 사안이고요, 관련해서 김선교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밟아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농협법 체계 전체에서 정부의 입장은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김선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 차관님, 내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자세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요,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품목조합은 해당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농업인

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지역축협 조합원의 자격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에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돼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그런데 축협은 왜 ‘경영하는 자’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95년도에 품목을 중심으로 한, 95년도 축협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바가 있고요. 품목조합의 경우는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해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종사자까지 그리고 품목조합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경영자로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알고 있는 거지요? 지금 차관님 임의대로 답변하시는 거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여기에 보면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의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이겁니다.

그런데 축산협동조합은 ‘경영하는 자’로 돼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종사하는 자’로 돼 있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리고 핑계가 사료 안 쓴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실적이 없다, 그것은 축협에서 해당 기관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판가름을 해서 쓰지 않고 실적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박탈시키는 거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이사회에서 조합원……

○김선교 위원 그러면 거기다 맡기고 단서 조합을 치면 되지 그것을 차관이 임의대로 그렇게 해서…… 저는 양계협회, 육계협회 그런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차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판가름을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김선교 위원 실태조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도시에 있는 데는 다 반대를 했고 농촌 지역의 조합원 수가 적은 데는 찬성을 했고 그런 현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조합원 수가

적은 조합은 찬성의견이 나오는 게……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조합원이 적다 보니까 조합원 숫자를 좀 늘려야 축협을 경영하는 데도 수월하고 그러니까 그것 좀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출자도 좀 늘려야 하고 신용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조합 설립요건에 조합원 수, 최소 조합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농촌에 있는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원 수를 늘리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지난 법안소위 이후에 전체 조합장님들하고 조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의 조합장님들은 반대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워낙 현장에서의 축협의 어려움 또는 양계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농협의 경우는 가족이 같이 경영을 하면, 부부 같은 경우에 복수조합원이 가능합니다.

○**김선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농촌 지역에 축사 허가 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어렵습니다.

○**김선교 위원** 님비현상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런데 축협에 가입돼 있는 조합원이 우사를 짓는다고 계사를…… 계사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서로 이해 충돌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허가도 잘 나고, 우리나라가 덴마크 이런 데처럼 넓은 면적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넓게 생각을 해야지요. 여기 탁상에 앉아 가지고 그냥 원칙대로만 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닭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다 현장을 다녀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닭이 축사는 맞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맞습니다.

○**김선교 위원** ‘경영하는 자’를 ‘종사하는 자’로 해 달라는데 그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확한 것도 아니네, 차관 얘기 들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난번 말씀이 있어서 저도 양계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만나 뵙고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현장 조합의 의견 또는 양계협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축협이나 원예조합 같은 품목과 관련된 조합들은 지금 법상으로도 농산물을 출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합원의 책임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협조합장님들의 과반수 이상이 출하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김선교 위원** 그분들이 축협에다 출하하고 싶지 않아서 출하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림이나 이런 데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것이지. 왜 막아요, 그것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막는 게 아니라 하림의 계열은 그 농가가 선택을 한 부분입니다.

○**김선교 위원** 농업협동조합은 ‘종사하는 자’고 축산업협동조합은 ‘경영하는 자’고. 뭐 품목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러니까 하림의 계열화 농가로 선택하는 부분은 농가의 선택이고요. 그 농가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조합을 이용하면 조합원 가입이 되는데 하림의 계열화 농가로 농가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김선교 위원** 어제 정책실장님도 제 방에 왔었지만 정말 책상에 앉아서 행정 처리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봐요, 말로만 농가소득이 5000만 원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완화를 시켜 줘야지.

그래서 법률 좀 개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조합원의 자격이 지역농협 또는 지역축협……

○**김선교 위원** 아니, 농업협동조합은 되고 축산업협동조합은 안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도 ‘경영하는 자’로 해서 바꾸면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농업협동조합을 ‘경영하는 자’로 해서 바꾸면 되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조합원의 자격과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김선교 위원** 그것이 차관이나 농림부의 저것

아닙니까! 그게 논리에 맞아요? 그러면 ‘경영하는 자’로 바뀌어야지, 농업협동조합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던 사안들이어서 저희가 경영과 종사 관련된 부분에서 해당하는 조합, 특히 축협의 경우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개인적으로 미안한데요, 협동조합 박사학위인가 뭐 받아 가지고 그런 것 아니야? 고집 세우는 것 아니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박사학위 받지 않았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농업협동조합도 ‘경영하는 자’로 바뀌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역농협에 종사하는 자로 해서 현재까지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이 법률안 다시 한번 정부 의견 내 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축협의 경우가 처음부터 품목·업종 조합적 성격이 강했었는데 농·축협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축협 관련 조합원 자격과 농협 관련 조합원 자격이 통합법에서 따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준용하는 규정을 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합원 자격이 축협 내부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면 수정안 내면 되겠습니까? 조합원 1000명 미만 이런 데 종사하는 자로 하겠다 이렇게 수정안 내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김선교 위원** 지금 축산업협동조합을 살리자고 하는 입장이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교 위원** 그러면 해 줘야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합의 조합원 수 관련된 부분에서 축협의 복수조합원제를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열화 관련된 부분에서 가축 계열화

법이 충분히 농가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선교 위원** 첫 번째, 농업협동조합을 ‘종사하는 자’에서 ‘경영하는 자’로 바꾸면 되는지 그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 부분은 농협의 의견을 수렴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두 번째, 정 안 되면 정말 조합원 수가 적은 데, 쉽게 말해서 축산업협동조합이 위기에 처한 그런 조합에 한정해서 해 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종사자를 빼고 다 경영자로 가는 것은 기존에 조합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농협과 같이 조합장님들 의견과 현장 의견 수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김선교 위원** 잠깐, 그러면 ‘종사하는 자’를 ‘경영하는 자’로 해서 농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이해당사자로서 기존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농협에는 상당수가 종사자, 가족 종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선교 위원** 거기에는 부부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맞습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김선교 위원** 그런데 뭐 이거 가지고 그렇게 못 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축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교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조합원 수가 많은 데는 그런 분들이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네는 찬성을 안 한다 그러면 어려운 조합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 부분 조합원 수 관련해서는 지역축협 전체의 일괄 규정이고 한데요. 최근에 농가의 규모도 커졌고 농가 수가 현장에서 많이 줄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제도와 조합원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저 설립기준이라든지 복수조합원을 통한 조합원 수 증대라든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농촌 지역에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저희도 긍정적으

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게 무슨 긍정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현장 축협의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김선교 위원** 정부 의견이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어떤 부분?

○**김선교 위원** 이 법안, 정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이 법안에 대한……

○**소위원장 위성곤** 동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선교 위원** 동의하나, 부동의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저희는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정점식 위원** 제가 질의를 할까요?

차관님, 95년 6월 이전에는 ‘120일 이상 종사하는 자’라는 조합원 규정이 있었는데 95년 6월 달에 이 규정을 변경한 이유가 뭐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90년대 WTO 이후에 UR 대책으로 본격적으로 축산 전업농가를 육성했고요. 그때 양돈농가를 포함해서 축산을 굉장히 유망한 품목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축산 전업농이 급속히 늘어나고 식생활 구조도 축산물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축산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서, 특히 축협 같은 경우는 품목조합입니다. 품목조합은……

○**정점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일단 95년 6월 그 당시에 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 바꾸었는지 한번 근거 자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차관님은 계속 품목별 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업협동조합법상의 품목별 조합은 조합원의 자격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기본적인 자격은 경영으로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가입과 관련된 부분은 조합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110조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기본적인 조합원 자격은 법에 의해서 경영인으로……

○**정점식 위원** 아니, 110조를 보라니까요, 차관님. 법조문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품목조합의 조

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다른 조항처럼 시행령에 위임은 안 해 났어요.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관련 110조.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110조에 조합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고요. 105조에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차관님은 품목별 조합 중의 하나가 축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품목별을 예로 든 것 아닙니까. 그 품목별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국 축협에 의견 조회를 해 보니까 반대하는 조합도 있고 찬성하는 조합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반대하는 조합이 좀 많았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농협 법률에서의 품목별 조합 비슷하게 과연 축산업협동조합도 정관으로 해서 각 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게 나은지를 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한번 보고를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위성곤** 김선교 위원님 시간을 많이 드렸고요.

○**김선교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김선교 위원** 차관님, 농업협동조합의 ‘종사하는 자’하고 축협의 ‘경영하는 자’를 분명히 따져 가지고 확실히 해서, 만약에 안 되면 제가 농업협동조합법을 ‘종사하는 자’에서 ‘경영하는 자’로 해도 되는지 그것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농촌 지역의 축산업협동조합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축산 허가기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가지고, 지금 정점식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 보완해 가지고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정점식 위원** 다음번에 계속하는 걸로 합시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다음번에 계속하는 걸로 하지요.

○윤재갑 위원 하는데, 저도 주문할 게 있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말씀하십시오.

○윤재갑 위원 개념상으로 보면 계열농가도 조합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 보니까 입식, 사료, 출하 이게 독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열농가하고 현재 반대하는 축협들하고 회의를 해서, 들어오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받아 줄 건가 이런 회의를 해서 정리하고 이 안건을 다음번에 정리합시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출자하고 이용하고 또 이용에 따라서 배당하는 것인데 그게 모두 이루어져야 조합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8항까지 모두 68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회의에서 상당 부분 논의를 마쳤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심사 자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번,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 및 등록제를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의 종류를 8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중에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3종을 허가제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등록제 7종, 허가제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등록제 4종, 허가제 4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은 허가·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경미한 사항만 신고에 의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변경허가·변경등록을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

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의 주요 생애과정에 관련된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영업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영업의 허가 및 등록과 관련한 중요 사항의 변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반려동물 영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4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업종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동물입양중개업 신설 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파양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추후에 동물입양중개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지금까지 반려동물의 소유자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려동물은 입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업이 없으면? 다 개별적으로 중개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파양하면서 중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인 간의 거래를 포함해서…… 지금 대부분이 사인 간의 거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

인 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중개업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43페이지입니다.

동물장묘업에 이동식 영업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동식 동물장묘업의 경우 영업장 변경에 따른 영업제한지역 설정이 곤란하고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이 부분은 환경영향과 주변 민원을 감안해서 제한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20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동식은 제한지역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44페이지입니다.

무등록·무허가 영업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과 무등록 영업 위반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같은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재 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박홍근 의원 전부개정안에서 무허가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무등록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어서 개정안의 내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수석전문위원 설명한 대로 위반 정도에 따라서 처벌 기준을 차등

화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46페이지입니다.

맹견 취급 영업자에 대한 시도지사의 취급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별도의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도록 한다면 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47페이지입니다.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영업의 성격이 다른 동물장묘시설에 관한 사항을 기타 영업시설과 분리·규정하여 법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원안입니까, 수정의견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48페이지입니다.

공설 동물장묘시설에 대해 대형 동물 처리에 적합한 화장시설 구비를 의무화하는 규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하되 시설기준을 농식품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체계·자구 수정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4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등록·허가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영업 등록·허가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하고 있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자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영업자 파산 시에 보유하던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51페이지입니다.

동물학대자의 반려동물 영업제한기간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영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7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영업 등록·허가 제한기간을 이미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동물학대자에 대해서는 5년까지 추가적으로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개정안 입법에는 신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영업자 책임 강화 취지는 전부개정안 그리고 252쪽 하단의 고덕 글씨처럼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수정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5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영업을 등록·허가·신고 의무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에 대한 신규 등록·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록·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두 차례 이상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등록 및 허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과도한 진입장벽을 설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제한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55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휴업·폐업 시 신고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과 보고 등의 의무를 신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업 이후 동물을 방치하는 등 남겨진 동물의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포함한 처리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박홍근 의원 전부개정안이 보다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전부개정안에 원안 동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부개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57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사항의 직권말소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등록된 영업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부여함으로써 폐업 현황을 보다 신속히 반영하고 실태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전부개정안에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개정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5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반려동물 영업자의 구체적인 준수 내용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영업의 명의 도용과 대여를 금지하는 등의 준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실적 보고 규정과 관련해서는 영업실적의 경우 기업비밀 등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은 수정의견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6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수입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분양 시 해당 동물의 수입 여부, 수입국,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고와 국내 동물생산업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전부개정안에 기 반영된 내용으로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62페이지입니다.

동물장묘업자에 대한 준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장묘업자에게 살아 있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안락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63페이지입니다.

사인 간 반려동물의 분양 시 동물판매업자의 중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무료 분양의 경우 동물판매업의 중개를 거치도록 한다면 사적 행위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따른 비용부담이 동물소유자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 입법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사인 간 거래가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중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65페이지입니다.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의 등록신청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동물판매업자가 등록신청을 한 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에게도 등록신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동물등록제의 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66페이지입니다.

동물생산업자에게 개 또는 고양이의 출생 등록 및 30일 이내 변경 신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선행적인 연구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등록을 출생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전부개정안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취지도 일부 반영되어 있고 아직은 이력제와 연계해서 추가검토할 사항이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검토 필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68페이지입니다.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 및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 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또 농식품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장과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영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 이력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여 반려동물 영업자와 이용자 간의 판매 등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원안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수석님, 좀 더 간단하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점식 위원** 왜 그러냐면 눈으로 순식간에 읽을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계속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70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교육 규정을 영업 허가·등록 전 교육, 정기 교육, 별칙 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화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7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허가 또는 등록 당시의 사항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취소나 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영업 허가·등록의 취소나 정지 시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적합한 사육·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영업 허가·등록의 취소 규정과 결격사유 규정 간에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정점식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75페이지입니다.

잔인한 방법 등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반려동물 영업의 등록 또는 허가 취소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부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전부개정안에 더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7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할 수 있도록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가능한 대상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사유를 들고 있는데 이 중 네 가지 사유는 행정사항 미준수를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적절하나 나머지 한 가지 사유는 동물학대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써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과징금 부과 삭제 수정의견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81페이지입니다.

동물의 보호 및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출입·검사 대상의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출입·검사 대상에 민간동물보호시설과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동물복지축산물표시 영업자 등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동물의 보호·복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일부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8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추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현행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이행명령제도는 동물학대 및 동물 위해에 대한 중지명령을 포함하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서 신중한 의

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지금 전부개정안의 동물사육 금지가처분제도를 통해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전부개정안 11조에서 취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8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센터 등에 대하여 영상정보 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위임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정부 측 수정의견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영상정보처리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설치 강행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처벌을 상향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정의견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9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감시원과 동물명예감시원의 명칭을 동물보호관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업무를 보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93페이지입니다.

동물학대행위자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적 불비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명칭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명예동물보호관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의견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94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감시원 업무에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현행법상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에는 동물 보호 관련 업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동물미용학원 실습견에 대한 보호 사무도 이에 포함되므로 별도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은 실익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개정 실익 측면에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96페이지입니다.

5건의 개정안인데요,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려는 취지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과 관련해서 5건이 서로 다른데 농식품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위해서 약 1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박홍근 의원안 쪽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전부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98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진흥원 또는 동물권리보장원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정책을 연구·지원하고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설립하려는 내용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설립 시 명칭을 동물복지진흥원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측 입장은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재정 당국과의 논의에서 재정 당국의 입장은 공공기관 등에 위탁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안 93조 조항은 삭제하되 안 제96조(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에 이 법에 따른 업무와 동물복지진흥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으로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정점식 위원 위원장님이 별말씀 없으시면……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0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및 청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발급 및 재발급 등을 수수료 납부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이번 개정안 입법에 맞춰서 수수료 규정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문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체계·자구 수정 의견으로 동의합니다.

○윤재갑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정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07페이지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농식품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농림축산 또는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필요한 입법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물복지진흥원 위탁과 관련된 위탁 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 관련해서 4항 보면 위탁받은 업무 수행 기관·법인을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뒀는데 과연 이런 업무까지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가 있

는지에 대해서는 차관님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담당 국장님이나 누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입니다.

이건 정부의 예산과 정부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유사 입법례라든가 이런 데서도 충분히 공무원에 준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라든가 책임을 같이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돈 주면서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수정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08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을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가 소유 농사동물에 관한 사항, 민간동물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을 조사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입니다.

다만 인용 조문의 오류가 있어 일부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자구 수정으로 동의 의견입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11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영업의 허가·등록 정보 및 취소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반려동물 영업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은 체계상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민국 의원님 안은 동물학대 등의 사유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1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실시되는 동물 실태조사에 개물림 사고의 발생 유형 및 가해 견종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에서 전부개정안에서 맹견에 대한 정보 및 사고를 일으켜 기질평가를 받은 동물에 대한 정보를 실태조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전부개정안에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주간을 동물복지주간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입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법정 기념일로 정하는 것보다는 교육·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반려동물에게 유해한 비료나 농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려동물 유해물질을 공동

주택, 도시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식품부는 개정안 입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서의 설명의무나 아니면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수용곤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동물학대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수명령 불응 시 벌칙 조항도 필요하므로 전부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전부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부개정안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25페이지입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벌칙 내용을 종합해 놓은 건데요. 별도의 심사라기보다도 앞에서 한 내용들을 자료로 종합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33페이지,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이 부분도 앞의 개정 내용들을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원안 동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342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단서 규정을 통해 일부 조항은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2년간 유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한 제54조의 경우에도 2년간 유예하도록 의견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들은 인용 조문의 오류가 있는 등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위원장님, 한 가지 정정했으면 합니다.

아까 262페이지의 동물장묘업자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에 대해서 저희가 박홍근 의원 전부개정안과 같이 수정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 정운천 의원님 안으로 제가 원안 동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부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견으로 동의합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점식 위원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제 다 논의했는데요. 과거 논의했던 것 중에 제가 제안했던 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싶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있는 1m 목줄 사육 금지 조항인데요. 책자를 보시면 ‘2m 이하, 체장 3배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을 지난번에 부령에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 조항이랑 그다음에 84페이지 도축장 내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도 부령에 반영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것을 법안 본문에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6페이지에 봉사

동물 실험 제한 조건인데요. 이게 지금 시행규칙에 반영돼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올리는 조항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시행 세칙이 아니라 직접 법안에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되어서요 이 부분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취지는 공감을 한 것이고,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신 내용이니까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 의견 다른 것 있으세요?

○윤재갑 위원 꼭 차관님 입을 빌려서 할 필요 없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항들이라서요.

○소위원장 위성곤 41페이지 보십시오.

뭘 파악을 못 해요?

○정점식 위원 하나씩 말씀을 하십시오.

○소위원장 위성곤 페이지를 다 얘기했는데 무슨 파악을 못 해요?

반려동물에게 2m 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목줄로 지속적으로 묶어서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난번에 차관께서 부령에 담겠다 하셨으니까 이것을 법안에 올리는 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동의하신 거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84페이지 도살 관련해서 영상기록장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복지인증 지정 시 도축 요건에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농식품부 부령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것과 관련되어서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보호시설, 동물생산업에 CCTV를 설치하게끔 의무화하고 관련되어서 아까 의결했잖아요. 이 정도는 법안에 넣어도 충분히 의견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입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2m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 크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개체는 한 20cm, 30cm 되는 개체가 있는데 그것은 2m가 충분하겠지만 큰 동물 같은 경우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부령에서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보

다 더 동물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CCTV 관련해서는 단순히 개체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촬영하게 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상황별로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앞서 반려동물의 내용을 보면 2m 이하, 체장 3배 이하의 짧은 목줄로 지속적으로 사육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작은 동물인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체장이 30cm면 60cm로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부령으로 하겠다고 응답한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정점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체장이 한 1m 정도 되는 큰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르면 목줄을 3m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예,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이 있을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 소위 가정에서, 좁은 단독주택 이런 데서 방법견 형태로 하는 경우 마당에다가 목줄을 매 놓으면 이게 체장에 따라서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2m 이하로 묶어 놓는 게 시골에서 마당 개로 키우는 경우에 대개 2m 이내로 해서 의도치 않게 마당 개를 키우고 있는 시골의 농민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범법자로 될 수 있는 우려도 없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강아지 체장이 1m 가까이 되는데 2m 이내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부령에서……

○소위원장 위성곤 지금 이 법령은 그 이하로는 할 수 없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짧게 매 놓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동물학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2m 이상

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는 부령에 담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부령에서 다양하게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마당 개 같은 경우가 대개 2m 이하로 짧게 키우고 있는 농가들도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법령은 얘기하는 거고. 어디 주택에, 농가주택에 2m짜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이원택 위원** 이 부분은 최대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몸길이의 2.5배, 2배 이상일 것 그리고 목줄 길이가 다른 데,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해서 현재 시행규칙에서 현재 규정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법령에 들어오지 않으면 단속이 가능한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예, 저희들 현재 이걸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지금 아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이렇게 해 가지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로 되어 있는데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두 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이렇게 지금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제일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

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해서 목줄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목줄 길이를 관리하라는 게 저희들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반적으로 많은 농가에 짧게 매여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이게 동물운 동가들이, 동물보호단체가 가장 요구하는 사안이에요, 이 얘기가. ‘1m 목줄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법률화시킨 건데, 2m 이하 그리고 체장 3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정도는 받아들여도 전체적으로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동물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조명이란다가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그런데 그런 조항들을 다 법으로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강화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원택 위원** 아까 반려동물이 어떤 특정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목줄 규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석 문제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주인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해석 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최소기준 정도는 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기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규칙에 동물의 몸길이라든가 두 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한번 좀 읽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생명정책관 김종구** 아까 말에서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이것도 저희들이 더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까마는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두 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위원장님, 기조실장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그러면 미터 수는 안 넣어도 좋으니깐요, 최소한 목줄 길이에 관한 조항을 수정으로 이렇게해보면 어떨까요? '반려동물인 경우 짧은 목줄로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 행위' 이렇게 해서 이걸 시행령에서 담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도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도 여러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서 실효성 담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끔 안을 좀 짜 보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41쪽 위원장님 안의 2항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이 부분에 부령이 정하는 목줄 관련된 사항을 넣어서 반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어떻게요?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4항을 변경하자라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4항 2호에 합쳐서 거기에 목줄과 관련된 것을 넣어서 이렇게 부령으로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정점식 위원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안 4항 2호에 '반려동물에게 목줄 등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이런 식으로 하자는 취지입니까? 40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4항을 그렇게 바꾸지요.

지금 '반려동물에게 2m 이하 3m……'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짧은 목줄로 행동을 제약하여 사육하는 행위' 그래서 짧은 목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예,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목줄에 의한 사육 제한 및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이렇게 해서 가운데에

하나 넣어서 목줄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2호에다가 넣는 걸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그 문구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상의해 가지고.

다음 CCTV 관련해서는……

○정점식 위원 그게 몇 페이지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84페이지입니다.

도축장 이야기인데요. 도축장의 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보호시설, 동물생명산업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하겠다고 동의하셨는데 왜 도축장에는 동의 안 하는지, 두 번째로는 앞서 얘기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서 의견을 했는데 왜 의견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랑 그거랑 다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지금 전체적인 취지는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현행 도축장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면서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에서 나오는 부분, 지정 도축장에 대해서는 개정안 취지를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체 도축장으로 초기에 다 확대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부분들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동물복지농장인 경우가 오히려 더 관리가 잘되어지고 그러지 않은 도축장이 오히려 관리가 안 되어질 텐데 이게 어떻게 거꾸로 돼 있는지가 의문이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간에 내용을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끔 법령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 부분은 지금 전부개정안 46조에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취지만 반영이 돼 있지요.

○정점식 위원 10분간 정회해서 밀도 있는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도록……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는 동안 봉사동물의 실험 제한까지, 아까 제안했던 206페이지 비침습적 연구에 한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기초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실험의 금지 51조 규정은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2호에서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이렇게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을 뒤서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실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확산으로 인해서 인간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또 봉사동물의 선발 또는 훈련 방식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은 현재 윤리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 내용을 추가해서 이 51조 단서 규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체계·자구를 바꾸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수석전문위원하고 체계·자구는 상의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상의해 주시고요.

또,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그다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축장의 모든 업무 영역은 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 그걸 강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도축장은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이 지정돼 있으니 거기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89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1항에 지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 영업장, 3개만 하도록 돼 있는

데 여기다가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 도축장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앞서 목줄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10항까지, 12항부터 16항까지, 18항, 20항, 23항부터 29항까지, 31항부터 34항까지, 36항부터 44항까지, 46항, 47항, 49항, 51항, 52항, 54항, 55항, 57항, 59항부터 64항까지, 66항부터 68항까지, 이상 5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법률안은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위성곤 홍문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랄까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정부 측이나 또 전문위원이나 우리 국회의원들 다 같은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300명인데 여기 68건의 동물보호법을 상정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우리 국회의원 300명이 여기 68건에 10명 이상 해서 발의를 했거든요. 이게 기본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600명 이상이 여기에 도장을, 사인을 했다는 얘기인데 여기는 상충된 법이 꽤 많습니다. 아까 별칭 조항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도축장 문제 같은 것도 이 법안 속에 상충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발의한다고 해서 열 분 이상이 사인을 해서 내놓고 또 정부나 국회 전문위원들은 이거 심의한다고 했지만 내가 제기한 문제점은 하나도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각론은 우리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저의 결론 말씀을 덧붙이면 사람 학대 이게 인간이 살면서 우선인데 반려동물 학대 부분을 더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나는 좀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민법이나 형사법을 봐가면서 동물에 적용을 해야…… 나는 사람이 우선이고 동물이 우선일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68건을 60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상정을 시킬 때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하든 정부가 하든 이것을 좀 거르는 장치가 있어서 이것을 모으고 모아서 엑기스만 뽑으면 이거 전부해서 한 15가지밖에 안 돼. 내가 죽 메모를 해서 갖고 있는데 많으면 17개 정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15개 정도인데 이것을 우리는 흐트러 놓고…… 개인이 명예롭게 뭔가 좀 바꿔 보자 해서 이 법안을 내놓은 것이 68건이고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600명이 넘고 그러면 한 사람이 상충되는 법안에 두 번, 세 번 사인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국회 전문위원들도 그렇고 정부도 세워야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이 법이 통과는 됐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중복된 수습 건을 그냥 똑같은 걸 놓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법에 상충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또 모르면서 통과시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애견을,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아까 끄트머리에 도축장 CCTV 문제 있었잖아요. 이것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축장에 빨리 CCTV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기서 법을 만들 때는 좀 단조로우면서도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잔뜩 늘어놓고 몇 시간씩 했는데 결과는 15~20개면, 간단히 끝날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면 우리 법안소위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홍문표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면서 법안 수요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의 명문화 문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방식 일원화 및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등과 관련하여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더 수렴하여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주문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70항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한 몇 개씩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II권의 2페이지입니다.

먼저 법 제정 필요성입니다.

이 법률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농작물 생산과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를 전용하는 일반 태양광에 비해 농지보전 및 식량안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 그리고 농업인들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 외에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고.

법률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촉진하는 경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농업인 주도가 아닌 기업 중심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법과 농지법과의 관계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해서는 이 법률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하도록 하면서 추가적으로 위성곤 의원님 안에서는 이 법은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23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 농지관리체계의 혼란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그 허용 여부를 농지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3년으로 명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필요 시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입니다.

제정안은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 지상 농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하고 또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거주기간 제한 규정은 귀농인들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 농업인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농업인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주민참여조합에 대해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등의 서류를 3년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농업인 자격 유무와는 무관한 자료이므로 필요할 때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2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 현재 농촌 그리고 농지의 다양한 재생에너지 관련된 요구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식량안보나 농지보전 차원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일반 태양광보다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농지법과의 관계 또는 주체 그리고 발전지구 이런 다양한 좀 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산업부를 포함해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문제 그리고 농촌 공간계획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이 내용의 연계 부분까지 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필요성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지법과의 관계도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렸듯이 농지법에서 규정할 부분과 이 법에서 규정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쪽의 주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과 농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법인이나 주민참여조합이나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주체가 되기가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지금 이 법과 관련해서 일단 전문위원 설명 그리고 정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전체적으로 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총괄적으로 전부 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의 총괄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의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은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김승남 의원님 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따를 경우 시장·군수만 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를 희망하는 농업인들도 발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시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 시 8개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인허가 규정 중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1, 2, 3, 6, 8, 5개 의제 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머지 3개 의제 규정과 관련해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보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농지전용이 아닌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서만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4번, 농지법에 따른 인허가 중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외에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를 의제하는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5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연분묘 개장 허가는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전기사업법에 따른 인허가 중 발전사업 외에 송·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무관해서 인허가 의제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결격사유 및 사업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된 후 2년 이내의 자, 전기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장·군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곤 의원님 안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시에는 수익금의 3배의 범위 이내에서 환수조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 중 4번

규정, 수확량 미달 사유와 관련해서는 농작물 수확량은 기준 마련 및 실적 점검이 어려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승인취소 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수익금 환수조치,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근거 규정은 필요하나 수익금 환수 대상과 관련해서 단순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업의 미수행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부도 등으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까지 수익금을 환수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필요 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준수 사항으로 제정안은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준수 사항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재배가 허용되는 농작물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아닌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 안전성과 농작업성을 확보한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발전시설 설치기준 준수에 대한 규정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성곤 의원님 안은 단서로 일인당 발전설비 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원 시책 마련에는 동의하나 일인당 100kW 미만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전지구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선구매하는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는 형평성 문제로 반

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위성곤 의원님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농식품부는 수용하나 산자부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을 위한 송·배전설비 등의 지원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송·배전설비 비용의 감면 등의 시책을 강구하고 송·배전설비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송·배전설비의 우선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대기 중인 일반 태양광이 우선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마는 산자부는 타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위배 소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은 국가가 표준시설 및 설치규격과 표준시설 내 영농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에서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매립농지가 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발전사업의 수익 일부를 해당 농지의 임차인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익의 배분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높은 염도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염해간척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만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매립농지를 활용하여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배분 비율 등을 법령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금 등 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발전설비가 설치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수확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규정과 관련해서 정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규정은 사인 간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벌칙 및 과태료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감독을 위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과 관련해서 타 법률에서는 유사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 중 농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불응의 경우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이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다른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지금 조문을 하나 하나 다 답변을……

○소위원장 위성곤 예, 다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6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전체 필요성 관련된 부분에서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제정을 해서 실행하기에는 검토할 사항이 많

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발전지구 지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좋은 정책인데 농업인이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8쪽의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 부분도 추가적인 내용들을 보고 수정 동의 의견이고요.

10쪽의 내용도 수석전문위원 설명한 것처럼 수익 환수나 청문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12쪽, 준수 사항 부분도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설치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장관 고시 내용으로 수정 동의입니다.

13쪽, 전력의 우선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산업부하고의 협의 과정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6쪽, 송·배전설비 관련된 부분 또한 현재 산업부의 반대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18쪽, 시범사업과 특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시범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찬성의견이고요. 염해간척지에 관련된 부분은 자율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익 배분에 대해서도 일률 규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정 반대 의견입니다.

19쪽, 정책자금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도 관련된 내용은 수석전문위원 설명했던 내용과 같이 문구 수정도 필요하고 기업 및 발전사업자로 한정하는 과태료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동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또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정점식 위원 11월 23일 날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이 정부가 농촌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고 태양광 업자들의 수익을 높여 주기 위한 법률안 개정과 제

정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소위 법률안 반대 성명 그리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월 1일 날 논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절차적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전 공청회가 필수라 할 것이다’라는 결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농연이나 전농 측의 의견은 한번 사전에 들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농민단체의 의견들은 그동안의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농특위와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도 단체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직 일반 태양광에 의한 농촌의 피해화 이런 부분의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측면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민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정도까지는 서로 공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고 제도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충분히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환으로 태양광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전용이 되고 있지요. 일련의 농지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농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는 관점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

농업인 단체에서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되어서 여러 비판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업은 거기서 사업자들에게 배려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인들이 태양광 사업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제도를 설계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식품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탄소중립과 관련된 대전제하에서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요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농촌 지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선 지역주민 또는 농가가 주체가 되고 특히 농민이 주체가 되어서 영농형 태양광 방식으로 식량 생산과 에너지 생산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질서 있고 보다 공공적이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현재 국제법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농촌 공간계획에 의해서 재생에너지 지구, 여기에 있는 지구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해서 농촌 공간에 대해 농지 이외의 다양한 토지를 포함해서 지자체가 좀 더 계획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공간계획과 또 산업부를 포함한 타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좀 모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이제 뭐 약간 속도랄까 이런 데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다들 기후위기는 걱정하는데 너무 빠르다 또 너무 느리다 또는 우리는 안 된다, 어디만 해라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에너지 전환을 해 가는 데 적절한 건지.

또 전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속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올 해 감자 냉해 피해부터 시작해서 다 재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 목전에 와 있거든요. 이게 재해나 아니냐 가지고 맨날 논쟁해야 되고 실태조사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예를 든다면 농작물 피해라든가 또는 기후위기라든가 홍수라든가 폭염 이런 건 눈에 보이는데 에너지 전환하는 것은 사실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까 농촌 공간 재정비 사업 이런 게 있고 농지법과의 관계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로드맵이나 계획을 갖고 정확하게 하는 건지? 사실 이게 예를 든다면 농식품부 입장에서 한없이 태업하려면 태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태업하려면 태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이득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우리 지구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그럴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로드맵이랄까 계획이랄까……

아까 농촌 공간 이걸 우리 질문 때마다 나온 것 같아요. 그거 언제 끝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알추 11월 말 정도까지는 1차 마무리를 해서 전문가들 토론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시장·군수님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 연내에는 전체 안들은 좀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비가 어느 정도 되는 단계에서 농지법 개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 같이 다 검토되는 겁니까, 부처랑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간계획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토계획법과 농촌공간계획법이 같이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정 단계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내에서 용도지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농지만이 아니라 농촌의 산림을 포함한 모든 공간을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입각해서 용도지구별로 필요한 축산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의 동의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장할 수 있는 큰 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구의 생존과 관련돼 있고 또 전체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차근차근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홍문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 아까 차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전체의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각론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말씀 덧붙인다면, 농업경영인하고…… 오늘 아침에 두 군데 또 모레 두 군데 계속 농촌과 관계 있는 단체들이 이 문제에 반대하는 성명 발표를 하는 걸로 지금 정보를 듣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차관님도 귀담아들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듣고 있습니다.

○홍문표 위원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홍문표 위원 저는 염려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서 탄소중립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고 그래 갖고 농촌·농민·농지만 훼손되는 그런 중립으로 가면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간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안 문제가 한 열 가지 정도 목록으로 나오잖아요?

첫째는 지금 법 제정이 다 매끄럽게 되어 있지만 못해, 두 번째는 인허가 문제가 그렇고. 지금 인허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형질 변경하는데 얼마나 까다롭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절차 관계없이 태양광 하면 무조건 해 줘라, 지금 있을 수 없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구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청문절차를 밟아서 이걸 완료하려고 해도 아직 기본도 안 돼 있는 거고.

또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이 부분도 다른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데 지금 산자부가 이것 동의 않잖아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 아침에도 산자부 아는 친구한테 전화해 봤더니 지금 갖고 있는 우선구매에 산자부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실적인 부처 간의 문제.

또 지금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내놓고 염해간척지에 집중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우리의 농지와 해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자가 과연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하는데 어디까지 관여해서 어디까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 기타 수정 동의할 것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에 수정 동의가 5건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산재해서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또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인 어젠다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만들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농업과 관련된 단체는 현장에서 삶과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관님이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갖고 종합적으로……. 어제 또 거기에 차관이 안 오셨었는데, 어제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 같이 앉아서 이 문제 좀 얘기했는데 그분도 가는 목표의 방향은 해야 된다는 건데, 각론에 들어가서는 참 답답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여당 대표께서도 하시는데, 그래서 정부가 발빠르게 다양한 의견을 듣

고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서 좋은 안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하나의 테이블에는 올려 놔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너무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법안을 발의한 발의자로서.

농촌에 태양광시설이 만들어지는데 그 소득이 농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농촌에 돌아가지 않고 외부 사업자들에게 다 돌아가고, 그 소득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지는 농지로 보존되지 않고 전용되어서, 일반 잡종지로 다 전환되어서 농지가 파괴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고민에서 이 얘기가 출발했거든요.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 100kW를 하게 되어지면 1억~1억 5000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농협이라든가 정부 보증을 통해서 그 100kW 시설을 하고 그 태양광시설 밑에서 영농활동을 하게 하고 거기서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구조로 짰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인센티브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23년간 보장해 주는 겁니다. 태양광사업자가 다른 쪽의 농지를 가지고 하게 되어지면,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을 해야 되면 전용비용을 내야 되고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게끔 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농민들이 할 수 있게끔 했고 법의 취지는 농민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만.

그래서 이것은 여러 단체들이 반대 성명도 내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단체들의 성명이고요. 일부 단체들도 만나봤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태양광 사업을 농촌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투여되는 많은 자금들의 수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 농민들이 농촌에 살게 하고 그림으로써 농촌을 지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많은 지역이, 97개 지역이 행안부로부터 소멸 지역으로 지정 받아서 지원 받고 있는데요. 그 지역은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00kW를 한다면,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면 농촌에 살겠지요. 그러면 농촌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논의하지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랑 다시 협의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추진이 불가능한데, 그 에너지 지구를 만들어서 수행하려면 관련 법령이 필요하지요, 에너지지구를 어떻게 할 건지. 결국 이 법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식품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 농지 전부 없어진다, 지금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농촌의 소득이 전부 다 외지인에게 갈 것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택 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인데요.

사실 3020 정책은 문제인 정부 초기에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러다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한 3, 4년의 시간이 없었던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농촌공간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을 치르고 있고 연말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지켜본 당사자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은, 농식품부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 환경부, 여야 막론하고 다 걱정해요. 이것 걱정 안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론에 가면 사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 때문에 이게 굴절되고 왜곡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농식품부가 태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도 드렸는데 농민이 주체가 되고 농민도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 또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제가 볼 때 한 3년, 4년을 그냥 온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제출됐는데 여전히 농지법과의 관계를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 또 반대의 목소리도 당연히 듣고 보완에 보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도 또 해야 되는 건지? 또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점식 위원 정부 측에서도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니까 소위에 계류해서 조금 더 검토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계류하도록 하는데 야당 위원들께서도 농가들에게 비료 가격 얼마 주고 농약값 얼마 주는 것보다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예.

○소위원장 위성곤 관련 내용은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회의 진행 순서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어업경영체 논의하고 그다음에 마사회법과 전통 소싸움법은 논의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다루지 않고, 77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하고, 농지법도 정부 반대의견이 많아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산림조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심사 자료 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어업법인의 부동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유에 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 즉 염해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 받은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경영 및 농산물 유통·가공 및 관련 부대사업 등으로 제한하고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업 영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염해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직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벗어나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염해농지를 임대해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농지 임대가 부동산업에 해당하여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부동산업 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염해농지의 임대만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은 예외적인 농지 소유 허용 및 세제 혜택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법인의 농지 활용은 농업경영 목적에만 이용되는 것이 적절하고, 농업법인의 염해농지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 자금력을 가진 비농업인 주도로 설립되어 농업경영 의사 없이 염해농지 보유 및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농어업법인에 대한 저희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영농을 목표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사업으로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 특히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부분, 발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수용곤란,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차관님, 이것 제가 발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염해농지, 염해농지가 아니라 염해간척지지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여기는 일정 기간과 시간이 지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한 예비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부지에 한해서는, 예를 든다면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의 실적을 한번 보니까 사실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지만 추진 속도는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염해간척지인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소출도 돼요. 이런 데는 안 되는 것이고 현재 간척지 중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들 그리고 소출도 안 되는 곳들, 소출이 50% 미만이라든가 이런 안 되는 곳들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추진 동력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게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일시적으로 그런 데 좀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경영체법 발의를 했는데 발의 과정이 아까도 제가 큰 틀에서 약간 거북이 걸음으로 가고 있다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꼭 농식품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다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제시한 거거든요. 이 방안이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제안해 주신 법안의 취지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충분히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실제 염해간척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그중에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간척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 경영체로서의 법인에 대한 부분과 농지이용 관련된 부분, 이 전체에 상당히 변화를 주는 조항인데 대상 농지가 많지 않은 부분에서 푸는 것이 맞을지? 농지법에서부터 경영체법까지 전체적인 근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로 탄소중립을 포함한 좀 더 빠른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정부도 이미 그런 뉴딜 정책 이후에 전 부처별로 사업들을 발굴하면서 속도를 내고자 하고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국토 전체 중에서 많은 부분이 농업과 농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많아 보입니다.

○이원택 위원 차관님, 차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지금 실태조사 중에 염해간척지 중에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간척지 면적이 조사된 게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염도 측정을 해서 5.5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의뢰된 면적이 19년부터 보면 한 4500ha 정도 의뢰가 됐고……

○이원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지금 염도 측정을 보니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농사를 안 짓는, 지을 수 없는 면적에 대한 조사

가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지을 수 없는 면적은 안 나오는 거지요. 왜냐하면 5.5 기준에 맞추면 전기사업 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가능하게 해 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트되면 전기사업 허가까지도 갈 수 있는데 현재 6건이 완료가 돼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택 위원** 그것은 저도 알겠는데 전체 염해 간척지 면적 중에……

제가 거꾸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체 염해간척지가 다 농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염해간척지로 적시되는 것이……

○**이원택 위원** 없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없습니다. 간척지가 다 있고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전국에 10만ha의 간척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지금 농사짓고 있는 또는 어느 지역의 염도를 측정해 달라 그렇게 신청해서 오는 거지요.

○**이원택 위원** 농식품부가 이걸 실태조사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체 간척지에 대한 실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료 요청했는데 그것을 못 받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김종훈** 간척지의 현황은 있는 거고요.

○**이원택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간척지 중에 농사를 짓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농사를 못 짓는 면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면적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면적들이 몇 ha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없는 것 같은 경우는—태도를 바꾸는 거예요—이건 진짜 앞으로 10년 안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이런 데는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부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태도를 바꾸는 거지요.

왜냐하면 임차농으로 임차를 했는데 갑자기 태양광 한다고 하면 임차농 입장에서는 억울하지요. 반발하겠지요. 그런 농지는 제외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태도를 바꿔서 이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적조사와 실태조사, 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것이 만약에 정부 소관이라면 그 부지에는 정부가 태양광을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의견과 공청회를 거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못 받아 봤어요, 우리 보좌진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일정한 자본력이 들어가니까, 추진 동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경영체법 개정안을 낸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 중에—제가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경영체법과 관련해서 경영체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 등 이런 법인들은 영농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영농 외에는 안 된다 이게 그 법의 근간이다 이런 말은 공감이에요.

그러나 예외도 있고 또 부대시설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간척지에 영농을 하면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아까 영농형 태양광이지요? 그건 불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본래 목적에 맞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염해간척지에서는 가능하겠지요.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현재 염해간척지 열어 놓은 데에서만.

○**이원택 위원** 예,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하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섹터와 범위는 조금…… 다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 대응한다는 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응을 해 가야지 할 수 없는 건 시간을 더 갖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합의해 가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국장 김정희** 농정국장이 보완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농업법인의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라는 것이 기

본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이 외부 자본을 조금 더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 많이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대사업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농업 관련한 전후방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만 부대사업의 범위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농업과는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이 사업 분야를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차근차근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일 넣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으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할 것인지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아직도 논의가 진행 중이고 실제로 행정적으로 어떻게 영농형 태양광의 영농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범들도 지금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종합적으로 향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택 위원 저만 발언하는 것 같아서, 제가 발의한 법안이기에 때문에……

아까 그 면적과 관련된 것 한번 조사를 해서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저희가 못 받아 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염해간척지에 한해서 영농형으로 추진하는 것, 그 영농형이라는 것은 염해간척지 염도를 측정했을 때 영농도 할 수 있는 범위 내겠지요? 영농을 하면서 또 위에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차관님, 혹시 일본은 농업의 범주에 태양광 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 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예,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본은 태양광도 농업의 범주에 넣어서 농업 전체…… 왜냐하면 그런 이유일 거예요. 사실은 농촌의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태양광이나 풍력의 재생에너지가 결국 지구 환경과 관련된 동일한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런 철학적 관점도 좀 고려하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

습니다.

관련 법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간척지 활용사업 정의에 임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의 정의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정의 규정에 임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의 정의 규정은 임산물은 규정하지 않아서 임산물의 생산, 가공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이 간척지 활용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서도 농산물과 별도로 임산물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임산물을 정의하고 있는 임산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로 수정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영범 임산물 추가 관련된 부분에 동의 의견이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설명드린 대로 농식품부령으로 임산물의 범위를 좀 더 줄이게 해서 솟이나 합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지 않게 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수정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제가 발의했는데 정부안에 동의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7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선 교	위 성 곤	어 기 구	윤 재 갑
이 원 택	정 점 식	홍 문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영 진
전 문 위 원	심 정 희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 관	박 영 범
기획조정실장	김 중 훈
농업정책국장	김 정 희
농업생명정책관	김 종 구